

인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8나619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8나6193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단2388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강귀석

피고, 피항소인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을

담당변호사 차영애, 정진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7. 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단2388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1. 체결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31. 접수 제191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제11행, 제12행, 제14행의 ‘E건물’ 부분을 ‘I건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제5행, 제8행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부분(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먼저 D과 피고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2017. 5. 31. 당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2491호로 D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D의 기망행위 또는 D에 의하여 유발된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각 분양대금 상당액(원고 A 1억 2,300만 원, 원고 B 1억 2,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예비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위자료(각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2. 이 사건 분양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2018. 12. 3. 취소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D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된 2018. 12. 3.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와 D 사이에 2017. 5. 31.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이 사건 분양계약이 2016. 1. 3. 및 2016. 1. 16.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착오 취소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D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위 신탁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D의 무자력,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해선

별지 제1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남구 [도로명주소] 인천 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1층 27.72㎡

1층 11.1709㎡

2층 내지 13층 각 290.4355㎡

지1층 155.76㎡

지1층 57.4175㎡

지1층 23.6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55.43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 남구		대 59.2㎡
2. 인천 남구		대 134.9㎡
3. 인천 남구		대 137.8㎡
4. 인천 남구		대 107.4㎡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39.3분의 8.3352

별지 제2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남구 [도로명주소] 인천 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1층 27.72㎡

1층 11.1709㎡

2층 내지 13층 각 290.4355㎡

지1층 155.76㎡

지1층 57.4175㎡

지1층 23.6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55.43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 남구		대 59.2㎡
2. 인천 남구		대 134.9㎡
3. 인천 남구		대 137.8㎡
4. 인천 남구		대 107.4㎡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39.3분의 8.3352

